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안 제16조).

II. 검토의견

- 안 제4조의2제3항제2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제2항은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등을 지급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등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배치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배치취소, 배치인원

- 그런데 현행법 제6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가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종사명령’과 개정안의 ‘배치’ 간의 의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¹⁾.
- 두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1) 법률이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종사명령과 배치와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을 뿐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illegible]

(전문위원 최 기 도)